**2015년 기준 사업체조사(2016 경제총조사) 보고서**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시기
6. 조사주기
7. 조사항목
8. 조사단위
9. 조사방법

**Ⅱ. 용어의 해설**

1. 사업체
2. 조직형태
3. 사업체구분
4. 사업의 종류
5. 종사자수

**Ⅲ. 통계표**

1. 산업세세분류별 총괄
2. 산업소분류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3. 산업중분류, 종사자 규모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4. 산업중분류, 사업체구분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6. 산업중분류, 종사상지위 및 읍면동별 종사자수
7. 산업중분류, 대표자남여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8. 산업중분류, 종사자남여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9. 산업중분류, 대표자연령대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10. 읍면동 산업세세분류별 총괄
11. 읍면동 산업대분류별 총괄
12. 산업대분류, 부산시 및 구군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여 표본 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71호(경제총조사)이다.

1. **조사연혁**

1994년에 제1회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조사는 제23회 조사에 해당하며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의 일환으로 제2회 경제총조사에 해당한다.

1. **조사대상**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1. **조사시기**
2. 조사기준시점 : 2015. 12. 31. 현재
3. 조사대상기간 : 2015. 1. 1. ~ 12. 31.(1년간)
4. 조 사 시 기 : 2016. 6. 7. ~ 7. 22.
5. **조사주기**

연간조사로써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1. **조사항목**
2. 사업체명
3. 대표자명(대표자 성별과 연령 포함)
4. 소재지
5. 창설연월
6. 사업자등록번호
7. 조직형태
8. 사업의 종류
9.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0. 영업기간
11. 사업실적
12. 유형자산
13. 무형자산
14. 자산총계
15. 자본금
16. 자본잉여금
17. 결산마감월
18. **조사단위**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 ∙ 본점, 연락사업소도 별개의 조사단위)

1. **조사방법**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조사 실시

**Ⅱ. 용어의 해설**

1. **사업체**

사업체란 영리 ∙ 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하에 재화의 생산 ∙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한다.

사업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란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또는 법적 단위로써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이 조사는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이 조사는 산업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하였다.

1. **조직형태**
2. 개인사업체

순수하게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동업(공동경영)의 경우도 포함한다.

1. 회사법인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다.

1. 회사이외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이외의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1. 비법인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이있다.

1. **사업체구분**

① 단독사업체

동일 경영(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있는)의 본사(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분점(회) 등이 별도로 없는 1기업 1사업체를 말한다.

②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회(부), 분점(회)

동일경영의 본사, 본점, 본부, 중앙회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산하에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③ 본사, 본점, 본부

다른 장소에 동일경영의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부(외), 본점(회) 등을 1개 이상 거느리고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순수한 관리기능 만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1. **사업의 종류**
* 각 사업체가 주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 **종사자수**
2.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1.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영업자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기타종사자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대상사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1. 총계

①+②+③+④+⑤

**Ⅲ. 통 계 표**

1. 산업세세분류별 총괄
2. 산업소분류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3. 산업중분류, 종사자 규모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4. 산업중분류, 사업체구분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6. 산업중분류, 종사상지위 및 읍면동별 종사자수
7. 산업중분류, 대표자남여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8. 산업중분류, 종사자남여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9. 산업중분류, 대표자연령대 및 읍면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10. 읍면동 산업세세분류별 총괄
11. 읍면동 산업대분류별 총괄
12. 산업대분류, 부산시 및 구군별 사업체수, 종사자수